

제5호 의안 2019년 잉여금 처분(안) 승인의 건

- 의결주문: 2019년 당기 순이익 64,278,686원이 발생하였습니다. 기존의 손실금 915,674,131원에 보전하는 것을 승인하여 주십시오.
- 관계조항: 정관 제25조, 제33조 제5호

※정관 제25조(법정적립금)

-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※정관 제33조(총회의 의결사항)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5. 대차대조표, 수지계산서, 결산보고서의 승인과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

결손금 처리 계산서

만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

과 목	제17(당기)		제16(전기)	
	금 액		금 액	
I. 미 처 리 결 손 금		854,720,574		915,674,131
1. 전기이월 미처리결손금	915,674,131		917,610,474	
2. 회계변경의 누적효과	0		0	
3. 전기오류수정이익	0		0	
4. 전기오류수정손실	2,325,129		22,847,640	
5. 중 간 배 당 금	0		0	
6. 당 기 순 이 익	64,278,686		24,783,983	
II. 결 손 금 처 리 액		0		0
1. 임의적립금 이입액	0		0	
2. 기타법정적립금 이입액	0		0	
3. 이익준비금 이입액	0		0	
4. 재평가적립금 이입액	0		0	
5. 자본준비금 이입액	0		0	
III.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		853,720,574		915,674,131